

[대만] 2016년 6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 주요내용

「식용 경화유(hardened oil) 사용 제한」 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 공고.

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트랜스 지방은 주로 경화 처리를 거친 식물유로부터 나오며 그 경화과정은 지방의 분자구조를 변화시킴, 이에 대한 장점은 내고온(耐高溫) 및 안정성이 증가하며 보존 기한을 늘려주지만 동시에 불완전 경화로 인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됨

미국 FDA에서는 2015년 6월 17일 미국 FDA가 허가한 식품 외 가공 중 인공 트랜스 지방의 함유를 막기 위해 PHOs를 사용 제한 규정 기 발표, 대만 위생 복리부도 「식용경화유사용제한」 규정을 발표하여 2018년 7월 1일(제조일 기준)부터 식품 중 불완전 경화유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음.

위반 업자에게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48조에 따라 NT\$ 3만~300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시사점

식용경화유 사용 제한의 경우 약 2년 후인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만 수출 제품에 관하여 수출업체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해당 성분을 확인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함

○ 출처 : 위생복리부 식품약품관리국 2016.4.22.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 주요내용

「중화민국 식물 또는 식물상품규정(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일부 규정 수정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수정 사항

- ① 규정 갑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2항 「국가 또는 지역」란에 「류추」를 「일본(오키나와현, 가고시마현, 사쓰난제도 및 도쿄都 오가사와제도)」으로 수정함
- ② 규정 갑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28항 「식물 명칭 및 그 소속」란에 캐슈넛, 판울(약밤), 헤이즐릿, 너도밤나무 및 미국 참나무의 신선 열매를 배제함
- ③ 규정 갑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29항, 제35항, 제37항에서 39항, 제42항, 제52항의 「식물 명칭 및 그 소속」란 규정에 캐슈넛을 배제함
- ④ 규정 갑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29항 「식물 명칭 및 그 소속」란에 76종 퀸즐랜드과실파리의 숙주를 신규 추가
- ⑤ 규정 갑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35항 「식물 명칭 및 그 소속위치」란에 44종 복숭아과실파리의 숙주를 신규 추가
- ⑥ 규정 갑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55항 포도피어스병균(*xylella fastidiosa*) 검역규정을 삭제하고, 규정 을의 조건적 수입 식물 또는 식물상품 제1번 38항에 포도피어스병균(*xylella fastidiosa*) 검역규정을 삽입하고 이란, 터키, 이탈리아 및 캐나다 등 발생지역을 추가 적용함. 또한 숙주 식물의 범위를 정함
- ⑦ 규정 을의 조건적 수입 식물 또는 식물상품 제1번 제37항 세균성구명병(*pseudomonas syringae* pv.*syringae*) 규정을 신규 추가하고 일본 및 중국산 배접수는 <일본산 배접수 수입 검역조건> 및 <중국산 배접수 수입 검역조건>의 각각의 조건에 근거하여 수입하며, 또한 <일본산 배접수 수입 조건>을 신규 정함
- ⑧ 규정 을의 조건적 수입 식물 또는 식물상품 제2번 제66항 베트남산 백용과(*hylocereus undatus*)의 검역조건을 신규 추가함. 또한 <베트남산 백용과 신선 과실 수입 검역조건>을 신규 정함

○ 시사점

해당 식물 또는 식물상품을 對대만 수출 중인 업체는 수정 규정을 숙지하여 대만

수출 시 문제 시 되지 않도록 주의 요함

○ 출처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공고(문서번호 : 農防字第1051492993A號)

- <https://www.baphiq.gov.tw/view.php?catid=15025>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가. 「농약잔류허용량표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2015년 06월 24일 部授食字第1041301616號令 수정)

☐ 주요 내용

- 본 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정함
- 본 기준에서 칭하는 허용량 및 실측 잔류 농약량은 시판형태의 중량을 산출 기준으로 하며, 잔류농약의 검역은 농약 자체 및 함유하고 있는 대사산물을 포함함
- 축산·수산품을 제외한 식품의 잔류 농약량은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은 붙임1과 같다. 붙임 1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붙임2에 열거된 농약은 안전성이 높아 허용량 제한이 면제되었으며 잔류량 검사 면제
- 농약 주관기관이 공고한 사용 금지 농약은 별도 규정 외에 잔류량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농약 명칭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4를 참고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표 안의 작물 분류는 붙임5를 참고
- 본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관련 홈페이지

<http://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나. 농산물의 중금속 제한 기준

-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 적용대상 : 채소, 과일, 허브류

□ 적용대상의 중금속 제한 허용치

농산물 분류	카드뮴	납
작은 잎 채소류	0.2 ppm 이하	0.3 ppm 이하
배추속 채소류 및 브로콜리류	0.05 ppm 이하	0.3 ppm 이하
뿌리채소류	0.1 ppm 이하	0.3 ppm 이하
인경채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박과 및 과실 채소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콩류 및 콩과 채소류	0.2 ppm 이하	0.2 ppm 이하
딸기류 및 소형과일	0.05 ppm 이하	0.2 ppm 이하
감귤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사과 및 배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견과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메론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기타 아열대 과일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허브 및 향신료	0.2 ppm 이하	0.3 ppm 이하
버섯류	3 ppm 이하	2 ppm 이하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2015년 9월 2일 수정 초안 공고
 쌀의 중금속 허용치 : 수은 0.05ppm이하, 카드뮴 0.4ppm이하, 납0.2ppm이하

다. 한국 신선과일 수입검역 조건

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 사항
수박	Frakliniella occidentalis	없음
사과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Frakliniella occidentalis	
배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Frakliniella occidentalis	
복숭아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Frakliniella occidentalis	
딸기	Frakliniella occidentalis	없음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참외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포도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레몬	Frakliniella occidentalis	"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
밀감	Frakliniella occidentalis	"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공 통 제 한 사 항

1. 한국 정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2. 수입 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며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해당 필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함
3. 운송 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또는 기타 식물제품의 역병충해가 발생했던 국가를 경유할 경우 BL(Bill of Landing; Delovery order)을 제출하고 [역병충해전염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방법]에 근거하여 검역처리. 검역 전 아래 중 하나와 같은 완전한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함
 - (1) 완전 밀폐식 포장
 - (2) 밀봉된 상자의 포장 시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 의 방충망을 덮어야 함
 - (3) 팔레트에 실어 운반 시 구멍이 1.6mm 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해야 함
 - (4)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시 식물검역증명서와 BL에 화물상자 번호와 봉인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하고, 대만 검역관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을 뜯거나 화물상자를 열어선 안 됨
4. 수입 시 목재포장재료는 [수입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검역처리를 하거나 반송/폐기처리
5.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
6. 수입을 신청한 제품이 통제관리 대상이면 먼저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
 - * 사과 : 2010년10월21일 갱신. 사과 외 과일: 2010년10월1일 갱신
 - * *Frakliniella occidentalis* : 서양꽃 삽주벌레
 - * *Carposina sasakii* : 복숭아심식나방
 -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줄기선충
 - *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 화살꼭지벌레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라. 한국 신선 채소 수입검역 조건

채소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사항 및 갱신일
인삼	Bulb mite; <i>Rhizoglyphus echinopus</i>	2010년10월1일
	Stem nematode, <i>Ditylenchus dipsaci</i>	
	Potato tuber moth; <i>Ditylenchus destructor</i>	
옥수수	<i>Frakliniella occidentalis</i>	
	Stem nematode, <i>Ditylenchus dipsaci</i>	2010년9월6일
배추	<i>Frakliniella occidentalis</i>	2010년8월15일
	Stem nematode, <i>Ditylenchus dipsaci</i>	
호박	<i>Frakliniella occidentalis</i>	2010년10월1일
	Stem nematode, <i>Ditylenchus dipsaci</i>	
시금치	<i>Frakliniella occidentalis</i>	2010년10월1일
	Stem nematode, <i>Ditylenchus dipsaci</i>	

채소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사항 및 갱신일
당근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앞이 달린 경우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Frakliniella occidentalis 추가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2010年10月1日
브로콜리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오이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마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2010年5月6日
느타리버섯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2009年8月14日
파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마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양배추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고추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가지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토마토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공 통 제 한 사 항

1. 한국 정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2. 수입 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며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해당 필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함
3. 운송 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또는 기타 식물제품의 역병충해가 발생했던 국가를 경유할 경우 BL(Bill of Landing; Delivery order)을 제출하고 [역병충해 전염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방법]에 근거하여 검역처리. 검역 전 아래 중 하나와 같은 완전한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함
 - (1) 완전 밀폐식 포장
 - (2) 밀봉된 상자의 포장 시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 의 방충망을 덮어야 함
 - (3) 팔레트에 실어 운반 시 구멍이 1.6mm 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해야 함
 - (4)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식물검역증명서와 BL에 화물상자 번호와 봉인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하고, 대만 검역관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을 뜯거나 화물상자를 열어선 안 됨
4. 수입 시 목재포장재료는 [수입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검역처리를 하거나 반송/폐기처리
5.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
6. 수입을 신청한 제품이 통제관리 대상이면 먼저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
 - * *Frakliniella occidentalis* : 서양꽃 삽주벌레
 - * *Carposina sasakii* : 복숭아심식나방
 -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줄기선충
 - *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 화살깍지벌레
 - *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 구근진드기
 -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감자나방
 - *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 감자 역병균 A2타입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3. 수산물

가. 수산물의 위생기준 (2009.11.30 전문 3조 제정, 2013년 8월 20 수정발표)

-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 수산물류의 최대 중금속 허용치는 아래와 같음

중금속 분류	메틸 수은	카드뮴	납
고래, 상어, 황새치, 참치, 심해어	2 ppm	0.3 ppm	0.3 ppm
줄비늘치, 가다랑어, 쌍각류, 대서양 메기, 아귀, 돔, 송어, 가오리, 갈치, 고등어, 참다랑어, 장어, 창꼬치어	1 ppm		
그외 어류	0.5 ppm		
조개류	0.5 ppm	2 ppm	2 ppm
두족류(내장 제외)	0.5 ppm	2 ppm	1 ppm
갑각류	0.5 ppm	0.5 ppm	0.5 ppm

자료 : 식품약품관리국 (食品藥物管理局)

나. 해조류식품위생표준(藻類食品衛生標準)

□ 해조류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조류 식품위생 표준안 확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 「판매의 식품, 식품용 세척제 및 그 기구, 용기 또는 포장은 위생안전 및 품질의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표준은 중앙관리가관이 정한다」
- 해조류식품의 적용범위 확대
관리 범주를 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남조, 녹조, 갈조 및 홍조류 등 제품으로 확대
- 해조류 식품의 미생물 제한량 규정, 중금속 제한량 규정
- 해조류 식품의 페오포바이드(pheophorbide) 제한량 규정
- 본 표준의 시행일자 : 공포일 기준(2013.8.21.)

■ 해조류(藻類) 식품위생표준초안 조문설명 ■

조 문	설 명												
제1조 본 표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한다.	본 표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제2조 본 표준은 식용 가능한 남조류, 녹조류, 갈조류 및 홍조류 등 식품에 적용 된다.	본 표준에서 칭하는 해조류 식품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제3조 해조류 식품의 미생물 제한량은 식품 형태(신선 또는 가공 등)에 따라 「일반식품위생표준(一般食品衛生標準)」 「생식용식품류위생표준(生食用食品類衛生標準)」 또는 「생(生)·숙(熟)식혼합즉석식품류위생표준(生熟食混合即食食品類衛生標準)」으로 적용한다	해조류 식품의 미생물 제한량을 명확히 규정한다.												
제4조 해조류 식품 중금속함량은 아래 제한 표준량에 부합해야 한다.	해조류 식품의 중금속 제한량을 명확히 규정한다.												
제5조 페오포바이드(Pheophorbide) 제한량 <table border="1"><thead><tr><th>종 류</th><th>녹조류</th><th>남조류</th></tr></thead><tbody><tr><td>항 목</td><td></td><td></td></tr><tr><td>기존 페어포바이드</td><td>60 mg/100g</td><td>50 mg/100g</td></tr><tr><td>총 페어포바이드 (기존 페어포바이드 +엽록소분해활성도)</td><td>80 mg/100g</td><td>100 mg/100g</td></tr></tbody></table> (비고) 1. 본 표는 수분함량 7% 이하의 녹조류 및 남조류(건조량 기준)에 적용되고 신선식품 및 홍조류, 갈조류 제품은 적용되지 않음 2. 「mg/100g」은 100g 당 제품 중 기존 페어포바이드 또는 총 페어포바이드의 함량을 가리킴	종 류	녹조류	남조류	항 목			기존 페어포바이드	60 mg/100g	50 mg/100g	총 페어포바이드 (기존 페어포바이드 +엽록소분해활성도)	80 mg/100g	100 mg/100g	해조류 식품의 페어포바이드 제한량을 명확히 규정한다.
종 류	녹조류	남조류											
항 목													
기존 페어포바이드	60 mg/100g	50 mg/100g											
총 페어포바이드 (기존 페어포바이드 +엽록소분해활성도)	80 mg/100g	100 mg/100g											
제6조 본 표준은 공포일부터 시행 된다.	본 표준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한다.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III 통관문제사례

- 해당사항 없음